

畜産業에 대한 免税事務運用指針

—부대시설을 明示하여 免稅 가능—

76년 2월 26일자로 内務部에서 畜産業에 대한 財產稅 및 取得稅 免稅 사무운용지침中 일
부수정사항이 시달되었다. 이번의 수정사항중 특히 우리 양축가의 주목을 끄는 것은 「부대
시설은 목장, 사무실, 관리사, 사료 및 기자재창고, 사료저장용 퇴비사 및 싸일로, 건초사
착유실, 진료실과 기타 목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명시하므로서 지금
까지 면세조치를 받지 못했던 상기시설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
달된 수정사항과 관계법규를 게재하니 양축가 여러분에게 맡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편집부

축산업에 대한 면세사무운용지침 수정

(세일 1234-2653(76. 2. 26))

1. 축산업의 개념

축산업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토끼, 친칠라, 사슴, 맹크, 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 증식, 채란, 채모, 착유 등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목장의 개념

목장이라 함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일 단위 장소(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법에서 말하는 초지와 사료포)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한우 사육목장
- 나. 유우 및 비육우 사육목장
- 다. 종마목장
- 라. 양돈장
- 마. 사슴목장
- 바. 양계장
- 사. 토끼 및 맹크 사육장

3.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이용상한선

구분	사업별	가축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평)			초지 및 사료포(ha)	
			축사	부대시설	시설부지	초지	사료포
한우(육우)	사육사업	1두당	1.5평	0.5평	10평	0.5ha	0.25ha
"	비육사업	"	"	"	"	0.2	0.1
유우	목장사업	"	2.5	0.5	10	0.5	0.25
양	"	10	2.5	1	25	0.5	0.25
돼지	양돈사업	5	10	4	25	—	—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10	5	20	—	—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20	5	50	0.5	0.25
토끼	사육사업	100수당	10	2	100	0.2	0.1
맹크	"	5수당	2	2	10	—	—

4. 기타 참고사항

가. 초지 또는 사료포는 양자중 택일 적용하여야 하며, 초지와 사료포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각각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여 적용한다.

나. 부대시설은 목장사무실, 관리사, 사료 및 기자재창고, 사료저장용 퇴비사 및 싸이로, 건조사, 착유실, 진료실과 기타 목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關係法規

가. 租稅減免規制法

○ 재산세의 감면조항

第9條(재산세의 감면)

第4項：畜産業者가 畜産業에 직접 사용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는 財產稅를 면제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産業者が 그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要件을 갖춘 畜産業者が 同要件을 갖춘 날로부터 5年内에 牧場用土地 및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目的事業以外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免除된 財產稅를 즉시 追徵(不可抗力의 事由로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 취득세감면조항

第10條(取得稅의 免除)

第9項：畜産業을 營爲할为目的으로 取得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로서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農水產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産業者が 그 要件

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基準의 要件을 갖춘 畜産業者가 牧場用土地 및 建物을 取得한 날로부터 5年内에 그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免除한 取得稅를 즉시 追徵(不可抗力의 事由로 인하여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例外한다)한다.

나. 法人으로 牧場新設時

新規出資로 인하여 寡占株主가 된 경우에는 地方稅法 施行令 第78條 第1項의 규정에 의거 取得稅를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施行令 第78條(寡占株主의 取得등)

第1項：법 제105조 제6항에서 “株式 또는 持分의 取得”이라함은 株主 또는 社員으로부터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는 경우를 말한다.

法 第105條(納稅義務者等)

第6項：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하므로서 第22條 第2號의 규정에 의한 寡占株主가 된 때에는 그 寡占株主는 當該法人의 不動產, 車輛, 重機 또는 立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 의무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寡占株主란 다음과 같은 者를 말한다).

法 第22條(出資者의 第2次 納稅義務)

第2號：株主 또는 社員 1人과 그의 大統領이 정하는 親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者들로서 그들의 所有株式金額 또는 出資額의 合計額이 當該法人의 發行株式 총액 또는 出資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者를 寡占株主라 한다.

■ 양계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

달걀과 닭고기는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포함된 인류 최고의 식품입니다.

—양계산물 소비 촉진회—